

경운대학교 일반직원정원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에서 규정된 경운대학교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의 정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직 직원의 정원) 학사행정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직 직원의 정원으로 한다.

구분	정원	비고
일반직계	60명	
3급(부이사관)	1	
4급(서기관)	1	
5급(사무관)	5	
6급(주사)	13	
7급(주사보)	22	
8급(서기)	10	
9급(서기보)	8	

제3조(기술직 직원의 정원) 학사행정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직 직원의 정원으로 한다.

구분	정원	비고
기술직계	13명	
5급(사무관)	1	
6급(주사)	1	
7급(주사보)	7	
8급(서기)	2	
9급(서기보)	2	

제4조(관리부서) ① 일반직원의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②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과 기술직간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